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0
----------	-----

2014년 12월 18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10일, 박호근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4년 12월 18일 상정, 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호근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지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기구를 규정함(안 제8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기관의 업무평가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적경제의 태동

-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학술 용어로 사용되거나 제한된 영역에서만 사용되었음. 2008년 이전에는 사회적기업 담론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자활공동체와 자활기업의 성장에 기초하여 2006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적인 주목을 받고 시민사회에서도 새로운 경향으로 지지받았음. 2008년 이후 부터는 사회적기업보다 더 큰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함.
- 다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이해되는 사회적기업이 먼저 발전한 뒤 다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중첩되면서 두 용어 사이의 이해가 모호한 상황이라 할 것임.
- 서구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의 복지지출이 축소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부활·발달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국가의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제도가 구축되었다 할 수 있음.

나. 사회적경제의 정의

-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법적인 개념정의를 되어 있지 않지만 학계 및 공공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조직” 을 의미하며,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란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 으로 정의되고 있음.
 -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¹⁾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으로 정의되고 있음.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신계륜 의원 등 65인, 2014.10.13.),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등 67인, 2014.4.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박원석 의원 등 10인, 2014.11.11.) 등 2건의 법안이 계류 중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3.12.19)도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임.

-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적 부문에서 이윤추구보다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하고, 자율적인 경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며, 수익배분 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위에 두는 원칙에 따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음.

다. 사회적경제의 의의

- 사회적경제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영역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의 구성주체는 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 비영리기업,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자생조직 등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참여자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지분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이므로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의하는 미션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 즉 사회적경제의 경제 원리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미션지향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갈등 요인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생·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라.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전망

-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용률 70%로드맵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사회적경제 영역의 고용규모를 2%로 확대(2013년 기준 0.4%)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²⁾.
- 서울특별시도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을 GRDP대비 7%, 고용비중은 전체고용대비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³⁾.
- 이에 따라 꾸준히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총합 2,55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2014년 10월말 기준)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계	지역형	인증			
2,552	370	145	225	146	1,547	489

2)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4. 관계부처 합동회의)

3)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2013. 3)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중합계획이나 지침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그 인식면에 있어서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 하겠음.

마. 조문별 검토

- 안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계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각 목을 이용하여 나열하고 있는 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각 목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 및 근거법률

사회적경제기업	근거법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 안 제2조제3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동호에 나열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헌법적 가치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사회적 가치로 정의할 필요성 또는 실익이 있는지가 의문이고 또한 나열된 내용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임.
- 안 제5조~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구매계획 수립·공고, 구매실적서 작성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공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시책의 수립과 실적 보고 등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선구매대상 제품과 사회적경제기업

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중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
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종합의견

-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우선구매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
력을 떨어뜨려 자생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구매제도
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판
로 개척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항을 의무
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0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항을 의무 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1조(교육훈련)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u>실시하여야 한다</u> . 1. ~ 3. (생략)	제11조(교육훈련)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u>실시할 수 있다</u> . 1. ~ 3.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진흥,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연도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4. 구매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조달 우대)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험교육

제12조(기관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

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